

해양부·해경, 해상교통질서 확립 공조

해상교통관제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

해양수산부는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해양경찰청과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2월28일 해양부 회의실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상관제업무 수행을 위한 '해상교통관제 업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해양경찰청과 체결, 교환했다. 이 자리엔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과 해운물류국장, 해양경찰청 경비구난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항로여건이 열악하고 대형선과 유조선 등의 입출항이 빈번한 부산, 인천항의 해상교통관제센터에 해양경찰청 직원을 고정적으로 파견해 해상교통관제 및 개항질서 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부는 지금까지 해상교통관제 업무에 있어 항법 미준수 선박이나 불법어로 선박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 대응력이 미흡해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대형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한 부산, 인천항의 경우 항만내 교통관제업무와 항만구역 외곽의 해상교통관제업무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 이원화돼 이용자들이 두 기관에 각각 선박위치 통보를 해야하는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번 협조체제 구축으로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현장의 해경 경비함정간에 상호 긴밀한 업무지원이 가능하게 돼 유사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현장 집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항해사의 위치통보 등 보고업무가 일원화돼 이용자의 불편과 민원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해양부는 앞으로 부산항과 인천항 합동근무의 운영효과를 분석해 그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는 여수항, 포항항, 울산항 등 다른 항만으로 확대할 계획이

다. EU의 경제사회평의회는 최근 정기선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제외를 규정한 4056/86의 수정에 대하여 현행 제도의 폐지는 법의 공백을 더 크게 만들뿐이라고 비판하고 제도 폐지에 따른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그 사이에 4056/86의 대체가 될 위원회 규칙을 기초로 하여 계속적인 동맹에 대한 포괄적용제외를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EU의 경제, 사회적 이익을 대표하는 기관인 경제사회평의회는 포괄적 적용제외의 폐지에 대하여 신중론이 나오면서 이후 EC의 검토작업에 미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C는 2004년 10월에 제출한 백서를 통해 동맹이 있음으로 해서 운임수준 안정 유지 등이 있다는 결정적이고도 경제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선사간 협정에 대한 독점금지법 포괄적 적용제외 폐지를 제안했다.

새로운 선사간 공통된 대체수단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왔으며, 그 대체제안을 기초로 2004년 12월 15일까지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최종안을 낼 예정이었다. EU 경제사회평의회는 의견서에서 현 시점에서 동맹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구주선사들이 비구주, 주로 아시아 선사들과 격렬한 경쟁을 하도록 만들면서 큰 손실을 입게 만들 것이며, 개발도상국 항로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구주의 중소선사들 입장에서는 대형선사들의 지배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반 경쟁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EC는 해운업의 특질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동맹제도 폐지에 따른 EU가맹국들과의 무역 상대국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요구했다.